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

제 정 : 2021. 09. 29.

「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」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과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생 내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, 연구자 및 조교로서 권리를 존중받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정의) ① 본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이라 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전공,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② 대학원생이라 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 및 수료상태로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③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및 수료상태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.

④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이 저자로 참여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.

⑤ 구성원이라 함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부생, 대학원생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, 직원, 연구원 등 학내에 직·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.

⑥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 통념에 따르는 정의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,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.

② 교수 및 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 2 장 대학원생의 권리

제3조(인간의 존엄과 가치) ① 건강과 혼인 및 모성보호, 가족생활 등을 비롯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관계된 사항은 연구와 학업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, 어느 누구도 연구와 학업을 이유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대학원생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부터 인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, 이를 위해 학교는 관련 제도 구축 및 부조리한 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.

제4조(평등권) ① 대학원생은 국적, 인종, 연령, 성별, 성적 정체성, 장애, 종교, 정치적 신념, 경제적 환경 및 기타 지위 등을 이유로 학업, 연구, 재정지원 및 조교 근무 등을 포함한 대학원 내의 모든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수업 및 행정절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할 경우, 대학원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학습권) ① 대학원생에게 정당하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는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,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전공과 연구주제 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도교수로부터 충분하고 적절한 학문적 지도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임신,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해 학업 및 근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.

④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, 지도교수 변경 이후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제6조(학문 및 표현의 자유) 대학원생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 이는 학문적 사안에 대해 독립된 의견(학생의 학과에서의 이론적, 방법론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 등), 제도적 방침에 대한 의견, 의심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및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.

제7조(연구 성과 명의권) ①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에서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,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부분 기여한

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.

제8조(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) ① 대학원생은 논문심사, 종합시험, 수업성적 등 자신의 학업·연구 관련 결과물에 대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심사 결과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에서 확실하게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·연구 관련 결과물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제9조(노동권) ① 대학원생은 수업, 연구, 행정에 관한 조교 또는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,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으로부터 학문적·육체적 노동을 제공받는 사람은 대학원생에게 명확한 노동시간, 노동내용, 인건비 지급 기준 등 노동조건을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단체결성권) 대학원생은 공동의 관심사에 관련된 동아리, 협회 또는 단체 등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,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알 권리) ① 대학원생은 입학 전 교육과정, 단계별 평가기준, 교직원 현황, 학위취득까지의 표준 및 평균소요기간, 장학금 지원 현황을 포함해 대학원 과정 동안 학습계획 및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학업, 근무, 기타 대학 내의 공식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.

제12조(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)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이러한 활동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 과정 체계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, 반드시 대학원생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, 모든 대학원생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) ① 대학원생은 학업, 연구, 조교 근무를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대학원생은 폭언·욕설, 체벌·구타 등 신체적 위협, 불쾌한 신체접촉·추행, 음주 및 동행 강요, 성희롱·성폭력, 성차별 및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

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및 연구와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4조(휴식과 안전에 대한 권리) ① 대학원생은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병결, 휴학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, 연구 활동 중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권리를 가지며, 학교 측은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15조(시설 이용 등에 관한 권리) ①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쾌적하고 적절한 연구공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연구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, 일정한 신청 절차를 통해 교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생은 육아, 보육 등과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, 학교 및 학과에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대학원생은 모유 수유실 및 육아 휴게공간을 포함한 각종 공적인 출산 및 보육서비스에 제약 없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6조(그 밖의 권리)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

제 3 장 대학원생의 의무

제17조(구성원으로서의 의무)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(학업 및 연구) ①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원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 및 발표 등에 위조, 표절,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시설사용 및 안전) 대학원생은 학내 연구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대학원생의 보호

제20조(기구 운영) ① 학교는 교직원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학교는 그 외 대학원생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교내 상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학교는 위 상설 기구와 교내 상담시스템에 대한 모든 대학원생의 이용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1조(문제제기 및 해결) ① 대학원생은 본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, 학교에 그 침해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통지하고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.

② 대학원생은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, 학교는 관련 기구를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)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·보완될 수 있다.